

규정개정20180511

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·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·개정 내용입니다.

- 관련 기사 : <뉴스H> 2018.05.14 [장학금·교원인사 등 제 규정 제·개정 공포](#)
- [규정개정](#) 문서

□

목차

- [1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](#)
- [2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](#)
- [3 직제규정 개정](#)
- [4 교무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규정 개정](#)
- [5 위임전결 규정 개정](#)
- [6 감사 규정 개정](#)
- [7 교원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](#)

[장학금](#) 지급 규정 개정

- [장학금](#) 지급에 있어 학점 2.0 기준은 '평점' 2.0 기준으로 변경
- '현지 학기 장학' 지급대상은 학부생, [인문과학대학](#) [독어독문학과](#), [중어중문학과](#) 및 [국제문화대학](#) [프랑스학과](#)로 변경
- 장학금 지급방법은 학비 감면에서 경비성으로 변경
- '라이언 장학' 신설 (자세한 사항은 [라이언장학금](#) 문서 참고)

[사회교육원](#)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

- '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, 과제물, 출석률, 학습참여도,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'으로 변경
-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[관광학과](#)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'문학사'로 변경

직제규정 개정

- 서울캠퍼스의 '교육선진화사업단'이 '[교육혁신단](#)'으로 명칭 변경

교무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규정 개정

- [교무위원회](#)와 [장학위원회](#)는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며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

위임전결 규정 개정

- ERICA캠퍼스 학생처 업무내용 중 기존의 [양성평등센터](#) 운영계획 수립이 ‘인권센터 운영계획 수립’으로 변경
- [인권센터](#)의 업무내용 변경 사항 :‘인권침해 운영계획수립 공식 신고사건 처리’ ‘인권교육 자료집 제작 및 배포’ ‘인권교육 운영’ ‘인권침해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· 인권심의위원회 관리’ ‘인권센터 행사 기획 및 운영’

감사 규정 개정

- 감사대상 부서에 있어 ‘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의료원장이 시행하고, 그 감사규정은 의료원에서 따로 정한다’는 내용이 신설됨

교원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

- [HK](#)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됨
-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학기당 12시간에서 ‘9시간 이내로’로 변경
- 전문연구원 명칭에 있어 ‘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연구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‘상담 교수’ 또는 ‘연구교수’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’는 내용 신설